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람	기 관 의 장
--------	---------

정기 제481호 2022. 3. 2(수)

조 례

장수군 조례 제2579호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1

장수군 조례 제2580호

장수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4

장수군 조례 제2581호

장수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9

장수군 조례 제2582호

장수 레드푸드·용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12

규 칙

장수군 규칙 제1193호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7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2022-182호

장수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26

장수군 공고 제 2022-201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0

장수군 공고 제2022-214호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6

고 시

장수군 고시 제2022-34호

사도개설허가 고시 52

공 고

장수군 공고 제2022-3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53

장수군 공고 제2022-37호

공시 송달 공고 55

회 람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6)

장수군 조례 제2579호

장수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규제개혁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제2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되어야”를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로, “군수”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제개혁팀장”을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소속하여”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8조 중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범위에서 수당 등”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포상) ① 군수는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소속 공무원 또는 군민이나 단체에 포상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는 「장수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협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제명)
 - “장수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함
- 포상 규정 신설 (제9조)
- 「법제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장수군 조례 제2580호

장수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에 따라 장수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 보조)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수가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

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 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보조사업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검토한 후에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 ②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경비를 보조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지도 ·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 ·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시설의 이용) 교육경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정산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장수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지역사회의 교육 관련 요구 증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인재 양성 및 관내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제3조)
- 보조사업의 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 (제4조~제5조)
- 보조사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제6조)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7조~제8조)
-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관한 사항 (제9조)
- 보조금의 정산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제10조)

장수군 조례 제2581호

장수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장수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현혈 및 현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봉사회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봉사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장수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장수지구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1조 ~ 제2조)
- 활동지원 및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 제4조)
-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제6조)

장수군 조례 제2582호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판매 · 홍보와 체험을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안정된 판로확보를 위해 조성한 레드푸드 융복합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레드푸드 융복합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1475번지 일원 및 호덕리 1207번지 일원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단지에 입장하여 이용 및 체험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단지의 본 건물 및 부대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 · 운영) 군수는 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관리 · 운영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위탁 방법으로 운영 할 수 있다.

1. 단지 내의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2. 단지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대외홍보
4. 단지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제4조(사용허가 및 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사용허가 및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5조(시설사용료 등)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

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제7조(시설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단지 내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자로부터 체험실비에 해당하는 체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체험요금표를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금 처리) 사용료, 체험료 등의 징수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군 세외 수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수익금을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단지 내 시설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피허가자 및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단지 내 시설의 운영 ·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장수군 농특산물의 판매·홍보와 체험을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레드푸드 응복합단지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제1조 ~ 제2조)
- 레드푸드 응복합단지 관리 운영, 사용허가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제3조 ~ 제7조)
-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
- 그 밖에 응복합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 제12조)

장수군 규칙 제1193호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2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 요청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입증 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신설 · 강화 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 ·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심사)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 및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사 요청) ①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5조제2항제3호의 처리 기한 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연 번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소 관	부서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부 서	팀 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	제정일 :	
	최근개정일 :	
검 토 개 요	<근거규정>	
	<input type="radio"/>	
	<주요내용>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존치 필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추 진 일 정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별지 제2호서식]

규제심사 요청서

자치법규명 :

① 규제명칭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③ 규제목적	
④ 규제내용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 · 하위 법령등의 내용	
⑥ 신설 또는 강화 등 사유	
⑦ 규제의 존속기한	
⑧ 관련부서 및 민간 · 단체의견	
⑨ 첨부자료	가. 규제영향분석서 나. 자체심사의견서 다.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라.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① 규제사무명		② 구분			
		신설		강화	존속 기한 연장
③ 작성자	인적사항				
④ 근거법령 등					
⑤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⑥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⑦ 규제 존속 기한과 사유	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				

II.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
4.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
9.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
-

자체심사의견서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	
4. 자체심사 의 견 (규제범위, 방법 등)	
5. 첨부자료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 공문 등)

1.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제정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근거 마련
-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을 정의함 (제1조)
- 기존규제 심사 시 규제 존치가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장이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함 (제2조)
- 신설·강화 규제심사의 안건 제출 방법을 정함 (제3조)
- 규제심사의 절차를 정함 (제4조~제7조)
- 규제사무목록의 등록·관리에 대하여 규정함 (제8조)

장수군 공고 제2022-182호

장수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장수군수

1. 제정사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6 제1호나목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장수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건설교통과 교통팀
- 2) 전 화 : 063-350-2567
- 3) 팩 스 : 063-350-5719
- 4) E-mail : cjf3501@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장수군 홈페이지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건설교통과(063-350-2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장수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장수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 소 및 예약소가 모두 장수군에 소재하고, 장수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공고 제 2022-201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팀장 직렬을 다양화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구별 인력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부서의 팀장 직렬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 및 별표1)

가. 기획조정실

- 홍보팀장 : 행정 6급(감 1) ⇒ 행정·농업 6급(증 1)

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여성청소년팀장 : 행정·사회복지 6급(감 1) ⇒ 행정·세무·사회복지
직 6급(증 1)

3. 금후 계획

- 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 2022. 2월 중
- 나. 전라북도 규칙안 검토, 공포·시행 : 2022. 3월 중

4. 따로 붙임

- 가. 일부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나. 관계법령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 (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350-2137, FAX : 063-350-570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함

6.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백영선 (전화 : 063-350-2137)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규칙 제 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		기관	총계	분청	의회 사무과	보건 의료원	농업 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총계		573	321	17	74	35	14	112(1)
	정무직계		1	1					
정무	군 수		1	1					
	별정직계		1	1					
6급	비 서		1	1					
	일반직계		535	316	17	74	2	14	112(1)
4급	소 계		4	3	0	1	0	0	0
	서기관·기술 서기관		3	3					
	기술서기관		1			1			
4·5급	소 계		1						1
	서기관·기술서 기관·행정		1						1
5급	소 계		25	14	2	2	0	1	6
	행정		2	1	1				
	행정·농업		3	2	1				
	행정·녹지		1	1					
	행정·농업·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시설		4	4					
	행정·환경·시 설		2	1				1	
	행정·사회복지 ·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수 의		1	1					
	행정·농업·시 설·사회복지		1	1					1
	행정·농업·사 회복지		1	1					1
	행정·농업·사 회복지·환경		1						1

	행정·농업·시설·보건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간호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의무·보건·간호·의료기술	1			1			
6급	소 계	115	74	3	10	0	3	25
	행 정	10	9	1				
	녹 지	2	2					
	시 설	4	4					
	보건진료	3			3			
	행정·세무	4	4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6	6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8	8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12	10			2		
	행정·농업·수의	1	1					
	환경·시설	1				1		
	보건·환경	1	1					
	행정·농업·시설	9	4	2			3	
	행정·세무·시설	4	3				1	
	행정·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농업·사회복지·보건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시설·공업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3	2					1

행정·농업· 세무	8						8
행정·농업· 사회복지	3						3
행정·농업· 독지	3						3
행정·농업· 환경	2						2
행정·농업· 농촌지도사	1	1					
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	2			2			
행정·전산· 농업·독지	1						1
보건·간호· 의료기술	5			5			
행정·사무운 영·통신운영	1	1					
행정·농업· 기계운영	1	1					
행정·환경· 공업	1	1					
운전	2	2					
사무운영· 전기운영	1	1					
소 계	162	93	8	26	1	4	30
행 정	22	18	3				1
세 무	3	3					
사회복지	4	2					2
공업	1	1					
농 업	4	4					
독 지	3	3					
보건	2	1		1			
의료기술	1			1			
간 호	4			4			
보건진료	3			3			
환경	1	1					
시설	14	13				1	
행정·세무	5	2					3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사서	2	2					
행정·전산	1	1					

7급

	행정·환경· 공업	1	1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15	5					10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0	8		1		1	
	행정·보건	3			3			
	전산·방송통신	3	3					
	보건·간호	7			7			
	시설·녹지	1	1					
	행정·농업· 수의	2	2					
	행정·농업· 녹지	2						2
	행정·농업· 환경	3						3
	행정·농업· 시설	8	6	2				
	행정·농업· 농촌지도사	1	1					
	행정·환경· 시설	2	1				1	
	보건·간호· 의료기술	3			3			
	사무운영	3		2				1
	행정·운전· 시설관리	1	1					
	운전	8	5	1	2			
	열관리·기계· 전기운영	4	1		1		1	1
8급	소 계	147	75	3	30	0	5	34
	행 정	17	15					2
	세 무	1	1					
	사회복지	3	3					
	농 업	4	4					
	녹 지	2	2					
	보 건	4			4			
	의료기술	5			5			
	간 호	11			4			7
	보건진료	5			5			
	환 경	2	2					

	시 설	5	4				1	
	행정·세무	7	3					4
	행정·사회복지	12	5	1				6
	행정·전산	3	2					1
	행정·공업	5	3				1	1
	행정·농업	11	8					3
	행정·독지	2	2					
	행정·환경	4	2					2
	행정·시설	23	14				1	8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전산· 방송통신	2	1	1				
	보건·간호	4			4			
	보건·간호· 의료기술	6			6			
	운전	5	2	1	2			
	열관리·기계· 전기운영	2					2	
9급	소 계	81	57	1	5	1	1	16(1)
	행 정	13	9					4
	세 무	1	1					
	사회복지	4	4					
	독 지	3	3					
	보 건	4	1		3			
	행정·세무	4	2					2
	행정·사회복지	12	5					7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2	8	1				3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16	15				1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 방송통신	1	1					
	행정·환경· 독지	1	1					
	보건·의기	2			2			
전문경력관계		1				1		
나군	농기계교관	1				1		
지도직계		29				29		

농촌지도관	3				3		
농촌지도사	24				24		
'농촌지도사·농업공무'	2				2		
연구직계	6	3			3		
연구사	기록연구	1	1				
	농업연구	3			3		
	학예연구	2	2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 1]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 관 직 급	총계	분행	의회 사무 과	보 건 의료 원	농 업 기 술 센 터	사 업 소	을 · 면	기 관 직 급	총계	분행	의회 사무 과	보 건 의료 원	농 업 기 술 센 터	사 업 소	을 · 면	
	총계	573	321	17	74	35	14		총계	573	321	17	74	35	14	112 (1)
	정무직계	1	1						정무직계	1	1					
정부	군 수	1	1						정부	군 수	1	1				
	별정직계	1	1						별정직계	1	1					
6급	비 서	1	1						6급	비 서	1	1				
	일반직계	535	316	17	74	2	14		일반직계	535	316	17	74	2	14	112 (1)
4급	소 계	4	3	0	1	0	0		소 계	4	3	0	1	0	0	0
	행정	3	3						서기관·기술서기관· 행정	3	3					
	의무	1			1				기술서기관	1			1			
4· 5급	소 계	1					1		소 계	1						1
	서기관·기 술서기관· 행정	1					1		서기관·기술 서기관·행정	1						1
5급	소 계	25	14	2	2	0	1	6	소 계	25	14	2	2	0	1	6
	행정	2	1	1					행정	2	1	1				
	행정·농업	3	2	1					행정·농업	3	2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농업· 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 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시설	4	4						행정·시설	4	4					
	행정·환경· 시설	2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사회 복지·녹지·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녹지·시설	1	1					
	행정·사회 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	1					
5급	행정·농업· 수의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 시설·사회 복지	1	1				1		행정·농업·시설· 사회복지	1	1					1
	행정·농업· 사회복지	1	1						행정·농업·사회 복지	1	1					
	행정·농업· 사회복지· 환경	1					1		행정·농업·사회 복지·환경	1						1
	행정·농업· 시설·보건	1					1		행정·농업·시 설·보건	1						1
	행정·농업· 녹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시설	1						1
	행정·농업· 녹지·간호	1					1		행정·농업·녹지· 간호	1						1
	행정·보건· 간호·의료 기술	1			1				행정·보건·간호· 의료기술	1			1			
	의무·보건· 간호·의료	1			1				의무·보건·간호	1			1			

기술							
소 계	115	74	3	10	0	3	25
행정	11	10	1				
녹 지	2	2					
시 설	4	4					
보건진료	3		3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7	7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8	8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12	10		2			
농업·수의	1	1					
환경·시설	1			1	1		
보건·환경	1	1					
행정·농업·시설	8	3	2			3	
행정·세무·시설	4	3				1	
행정·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시설·농업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3	2				1	
행정·농업·세무	7					7	
행정·농업·사회복지	4					4	
행정·농업·환경	3					3	
행정·농업·환경	3					3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2				
행정·전산·농업·녹지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행정·사무운영·봉사	1	1					
행정·농업·기계운영	1	1					
행정·환경·방재	1	1					
운전	2	2					
사무운영·전기운영	1	1					
소 계	162	94	7	26	1	4	30
행정	22	18	3			1	
세 무	3	3					

6급

의료기술							
소 계	115	74	3	10	0	3	25
행정	10	9	1				
녹 지	2	2					
시 설	4	4					
보건진료	3			3			
행정·세무	4	4					
행정·세무·사회	1	1					
복지							
행정·사회복지	6	6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8	8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12	10		2			
행정·농업·수의	1	1					
환경·시설	1					1	
보건·환경	1	1					
행정·농업·시설	9	4	2				3
행정·세무·시설	4	3					1
행정·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시설·공업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3	2					1
행정·농업·세무	8						8
행정·농업·사회	3						3
행정·농업·녹지	3						3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2				
행정·전산·농업·녹지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행정·사무운영·봉사	1	1					
행정·농업·기계운영	1	1					
행정·환경·방재	1	1					
운전	2	2					
사무운영·전기운영	1	1					
소 계	162	93	8	26	1	4	30
행정	22	18	3				1
7급							

7급

사회복지	4	2					2
공업	1	1					
농업	4	4					
녹지	3	3					
보건	2	1		1			
의료기술	1			1			
간호	4			4			
보건진료	3			3			
환경	1	1					
시설	14	13			1		
행정·세무	5	2				3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사서	2	2					
행정·전산	1	1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15	5				10	
행정·녹지(신설)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0	8		1		1	
행정·보건	3			3			
전산·방송통신	3	3					
보건·간호	7			7			
시설·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2	2					
행정·농업·녹지	2					2	
행정·농업·환경	3					3	
행정·농업·시설	8	6	2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사무운영	3		2			1	
행정·운전·시설관리	1	1					
운전	8	5	1	2			
열관리·기계·전기문영	4	1		1		1	
소 계	147	75	3	30	0	5	34
행정	17	15					2
세무	1	1					
사회복지	3	3					
농업	4	4					
녹지	2	2					
보건	4			4			
의료기술	5			5			
간호	11			4			7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5	4			1		
행정·세무	7	3				4	
행정·사회복지	12	5	1				6
행정·전산	3	2					1

8급

세 무	3	3					
사회복지	4	2					2
공업	1	1					
농업	4	4					
녹지	3	3					
보건	2	1			1		
의료기술	1				1		
간호	4				4		
보건진료	3				5		7
환경	2	2					
시설	5	4				1	
행정·세무	7	3					4
행정·사회복지	12	5	1				6

8급

행정·공업	5	3			1	1
행정·농업	11	8			3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4	2			2	
행정·시설	23	14		1	8	
행정·방재안전	2	2				
전산·방송통신	2	1	1			
보건·간호	4		4			
보건·간호·의료기술	6		6			
운전	5	2	1	2		
열관리·기계·전기운영	2			2		
소 계	81	57	1	5	1	16 (1)
행정	13	9				4
세무	1	1				
사회복지	4	4				
녹지	3	3				
보건	4	1		3		
행정·세무	4	2			2	
행정·사회복지	12	5			7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2	8	1		3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16	15			1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환경·녹지	1	1				
보건·의기	2			2		
전문경력 관계	1			1		
나군	농기계교관	1		1		
	지도직 계	29		29		
	농촌지도관	3		3		
	농촌지도사	24		24		
	농촌지도사·농업·공업	2		2		
연구	연구직 계	6	3		3	
구	기록연구	1	1			
사	농업연구	3		3		
	학예연구	2	2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행정·전산	3	2			1
행정·공업	5	3			1
행정·농업	11	8			3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4	2			2
행정·시설	23	14		1	8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2	1	1		
보건·간호	4		4		
보건·간호·의료기술	6		6		
운전	5	2	1	2	
열관리·기계·전기운영	2			2	
소 계	81	57	1	5	1 16 (1)
행정	13	9			4
세무	1	1			
사회복지	4	4			
녹지	3	3			
보건	4	1		3	
행정·세무	4	2			2
행정·사회복지	12	5			7
9급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2	8	1	3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16	15		1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환경·녹지	1	1		
	보건·의기	2		2	
	전문경력 관계	1			
	나군	농기계교관	1		
	지도직 계	29		29	
	농촌지도관	3		3	
	농촌지도사	24		24	
	농촌지도사·농업·공업	2		2	
	연구직 계	6	3		
연구	기록연구	1	1		
구	농업연구	3		3	
사	학예연구	2	2		
	9급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2	8	3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16	15	1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환경·녹지	1	1	
		보건·의기	2		2
		전문경력 관계	1		
		나군	농기계교관	1	
		지도직 계	29		
		농촌지도관	3		
		농촌지도사	24		
		농촌지도사·농업·공업	2		
		연구직 계	6	3	
연구		기록연구	1	1	
구		농업연구	3		
사		학예연구	2	2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 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급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수군 공고 제2022 - 214호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장 수 군 수

1. 자치법규명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구역 분리·반 조정(별표 2)

○ “별표 2” 중,

- 장수읍 장수리 하비마을을 “하비”, “부경”으로 분리 및 1개반 신설

읍면명	리명	리장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비고
장수	장수	8	하비 부경	1 2 1	본정통 본동 부경	
소계	13		45	95		

읍면	현 행			조 정			비고
	법정리	분 리	반	법정리	분 리	반	
계	73	215	463	73	216	464	
장수읍	13	44	94	13	45(1)	95(1)	
산서면	14	34	72	14	34	72	
변암면	11	32	61	11	32	61	
장계면	10	31	81	10	31	81	
천천면	10	28	69	10	28	69	
계남면	8	29	46	8	29	46	
계북면	7	17	40	7	17	40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22. 2. 23. ~ 3. 14.(20일간)

5. 의견제출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붙임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수(행정지원과)
- 팩 스 : 063-350-570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행정팀(☎ 350-2140)에 문의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부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리의 하부조직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읍면명	리명	리장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비고
장수	장수	8	하비 부경	1 2 1	본정통 본동 부경	
소계	13		45	9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리의 하부조직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中						[별표 2] 리의 하부조직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中					
읍면명	리명	리장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읍면명	리명	리장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장수	장수	1	하비	1 2 <신설> > 94	본정통 본동 <신설>	장수	장수	1	하비	1 2 부경	본정통 본동 부경
소계	13		44			소계	13		45	95	

장수군 고시 제2022-34호

사도개설허가 고시

「사도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도개설허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장 수 군 수

1. 허가번호 : 제2016-3호

2. 신청인 : (유)월곡태양광발전 대표 최혜지

3. 주소 : 장수군 천천면 승마1로 152

4. 사업기간 : 2016. 7. ~ 2022. 12.

5. 사도개설허가 재산의 표시

번호	사 도 신청자	사 도 현 황			
		위 치	길이	너비	면적
1	(유)월곡태양광발전 대표 최혜지	장수군 천천면 승마1로 152	357.5m	5m	2,960m ²

장수군 공고 제2022-3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장 수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구분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면적		보호유형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지정(㎡)	
소 계				1142필지	67,365,798	52,562,136	
지정	장수	장수	동촌	산6 외 580	23,135,823	19,145,28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장수	장수	노하	산29 외 184	20,135,555	19,920,32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장수	장수	동촌	산23-1 외 227	10,677,856	9,297,152	경관보호구역
	장수	장수	노하	산47 외 147	13,416,564	4,199,380	재해방지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구분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면적			보호유형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기 지정(㎡)	해제(㎡)	
소 계				45필지	245,474	189,343	189,343	
지정 해제	장수	장수	송천	산74-3 외 18	94,100	37,969	37,969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장수	장수	선창	산42-4 외 13	108,627	108,627	108,62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장수	번암	사암	산27-1 외 7	34,050	34,050	34,050	경관보호구역
	장수	장수	노하	산71-1 외 3	8,697	8,697	8,697	재해방지보호구역

3.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사유

-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 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4. 지정 및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별도고시)

5.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7. 위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토지 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수군청 산림과(☎063-350-2461)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이의신청서(서식) 1부.

-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도면
- 3.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필지내역 1부. 끝.

장수군 공고 제2022-37호

공시송달공고

『개정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 거소불명, 사망,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인하여 협의가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한 권리를 가진 분은 협의 기간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2. . .

장수군수

1. 사업명 : 개정제 재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3. 사업 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일원

4. 공고 및 협의기간 : 2022. 02. 21. ~ 2022. 03.11.

※ 협의기간은 별도의 협의요청으로 30일 이상으로 함(기 시행함)

5.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한 보상비를 토지소유자 개인별 협의에 의거 계약체결 후 계좌입금

6.보상금내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별로 문의 시 신분확인 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 063-350-7063,7067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 보상담당자

7.계약체결 구비서류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인감도장 각 1부

8.협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수자원관리부 1층

9.참고사항 : 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였을 때는 토지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협의 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10.공고대상 토지조서 : 별첨(엑셀 서식)

※토지별 보상금 내역은 별도 문의하면 개인별로 소유자 또는 관계인 확인 후 알려드립니다.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